

2026년 「파랑새기금사업」 운영 지침

① 기본원칙

- (가구단위 지원)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지원의 경우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지원(개인단위)
- (지원한도 설정) 동일한 항목(급여)의 긴급지원은 1회계 연도 내 1회만 가능.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랑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후 초과 지원 가능

* (1회계 연도)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

- (신속 지원) 담당자가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상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완료
 - 단, 지원기준 초과(행복e음에 최근 2년 이내의 자산조사 이력이 없는 경우 포함)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후 지원
- (타 법률 지원 우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이며 신청·조사·지원 등 일부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 준용

※ 적용우선순위 : 1순위(복지부 긴급지원) → 2순위(모금회 긴급지원) → 3순위(서비스원 파랑새기금) 순으로 결정

② 발굴 및 신청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발굴 신청 다각화

- (온 라 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129 콜센터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신고·접수된 위기가구 발굴

- (오프라인) 복지 이·통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계자 등 시민 및 복지 인적안전망 활용

② 복지신청 및 안내 창구 일원화

-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및 신청 창구 일원화
- 구비서류 :
 - (필수) 파랑새기금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선택) 건강보험료납부(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과세(납부)증명서, 지원내용별 구비서류*

* (지원내용별 구비서류)

유 형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구비 서류	1. 미·체납 확인서 2. 소액의료비 영수증 3. 학비 고지서	1.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 의료비 계산서	1. 임대차계약서 2. 미·체납 확인서 3. 화재증명원 4. 증빙사진 5. 사고현황확인서

※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③ 대상 조사 및 선정

① 대상자 조사

- (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근거한 최근 2년 이내의 자산조사
이력 적용 : 매매 등 소명 자료 제출 시 적용 제외
 -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긴급 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
- (예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근거한 최근 2년 이내의 자산조사
이력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재산세과세(납부)
증명서 등을 확인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② 지원단위 및 가구범위

- (원칙) 가구단위 지원(생계·주거비), 개인단위(의료비) 지원 병행
- (가구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직장 및 교육, 양육 등으로 인해 주(主) 소득자가 다른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가구에 포함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
 -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 및 구금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자 제외

< < 유형 별 제 출 서 류 > >

유형	관련확인 서류(선택)
가구원 확인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및 행방불명 신고접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
소득취업퇴직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실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출근부,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등
출소	• 출소증명서
노숙	• 노숙인시설에서 발행한 긴급지원 의뢰서
가정폭력	• 가정폭력상담센터 또는 위기가정 지원센터, 경찰서, 학대기관 등을 통해 발행된 사건사실 확인서 또는 접수증 등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보험가입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재산세과세(납부)증명서 등
기타	• 진단서 및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매출신고서, 경력증명서,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 등

<<민법 제 779조(가족의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제외 대상 및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노인복지주택 제외)
- 지원결정 후 다른 사유로 3개월 이내 신청자(의료지원제외)
- 타 긴급지원(보건복지부, 공동모금회) 종료 후 동일한 위기 사유(지원 당시 가지고 있던 복합 사유 포함)로 1년 이내 신청자
- 생계비 지원 중 개인 부채 상환 목적
- 의료비 지원 중 사회적 입원, 미용성형, 임플란트, 특실료, 제증명료, 만성질환*, 물리치료 등

* 복합적인 위기가정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정신보건·중독 등 진단비 및 치료비는 지원 대상

- 신청 시점에 해당되는 상병코드 외 다른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의료비
- 의료비 지원 중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의료비

* (신청일자) 파랑새기금신청서상의 신청일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구두, 유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최초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시점을 의미

** 퇴원 후 3일 이내, 공적 금융기관 채무(퇴원시점 마이너스대출, 소액대출 등)를 통한 납부 내역 확인 시 의료비 지원 신청 가능

※ 상기 제시한 지원제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랑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의 경우 지원 가능

④ 대상자 지원 기준 및 선정

- (기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인 자 중에서

- 일반재산 170,000천원, 금융재산 9,000천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세종시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
기사유 동일

위기사유+중위소득 110% 이하+일반재산 170백만원 이하+금융 9백만원 이하

<<2026년 중위소득 기준 110%>>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10% (파랑새기금)	2,820,662	4,619,222	5,894,940	7,144,212	8,312,391
일반재산	170,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9,000천원 이하				

○ (선정)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중위소득 및 재산정도, 위기사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을 초과(자산이력 정보 부재 포함)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④ 지원범위 및 내용

① 생 계 비(최대 100만 원)

○ (내용)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관리비 체납료, 건강보험 체납료
(공단 감액분 제외), 소액의료비(외래), 장제비, 학비, 기타 긴급생계비

② 의 료 비(최대 300만 원)

○ (내용) 갑작스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수술, 각종
검사, 약제비, 통원치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 중에 필요한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 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복합적인 위기가정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정신보건·중독 등 진단비 및 치료비

③ 주 거 비(최대 300만원)

- (내용)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고시원 등 거주 시 발생비용
- 주 거 비 : 월(연) 임차료 미납분
- 재해·재난 피해 복구비 : 개보수비, 생활필수품(가전제품 등), 폐기물처리비

유 형	주거비		재해·재난 피해 복구비	
세부항목	주거체납	임시거소	주거환경개선	폐기물처리비
지원금액	최대 1,000,000원		최대 3,000,000원	

⑤ 현장확인 및 적정성 심사

- (현장확인) 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의뢰된 대상자에 대하여 4일 이내 자택 등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선정.
- 단, 신청기관 담당자의 사전 현장 확인이 있었을 경우 신청기관 담당자의 현장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지원 요청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현장 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지원결정을 보류하거나 부적합 결정을 할 수 있음.
- (적정성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 건전한 재정집행 등 긴급구호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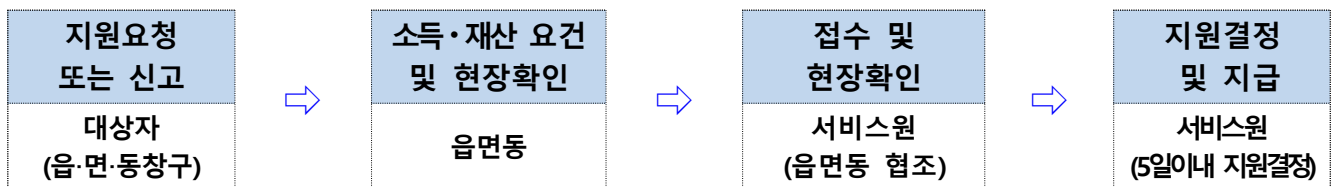
지출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지원 결정 가능
- 지원기준 초과(자산이력 정보 부재 포함) 대상 등 접수 후 7일 이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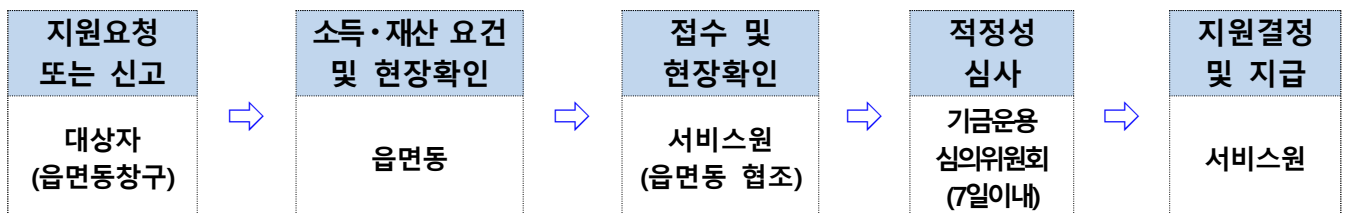
6 지원 방법 및 안내

○ (지원절차)

(1) 지원기준 충족 시



(2) 지원기준 미충족 시



○ (지원방법) 현금 지원 원칙. 현물(주거환경개선, 생필품 구입 등) 제공은 현금지원보다 효율적일 경우 지원 가능

- 생계비의 연체·채납분은 해당 업체 등으로 계좌 입금
- 주거비의 경우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의료비 지원 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간병비·의료기기 구입비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업체 등으로
계좌 입금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입금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
가구원 명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 (결정통보) 지원 결정 결과는 신청기관에 관련 공문으로 고지

7 지원 중지 및 반납

- (지원중지) 사망 또는 위기사유 해소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중지
 -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중지
- (급여환수)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원결정 취소·환수 결정 시 既 지급된 급여 지정
된 반납계좌로 입금

파랑새기금 지원 신청서

(앞면)

긴급지원 신청자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위기발생사유	☐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 제4호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 제5호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 조례로 정한 사유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휴·폐업)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실직)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노숙)					
	사업 신청 분야	☐ ①생계비 ☐ ②의료비 ☐ ③주거비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재 산 사 항	일반재산	☐ 건축물 (원)		☐ 주택 (원)			
		☐ 토지 (원)		☐ 임차보증금 (원)			
		☐ 선박/항공권 (원)		☐ 동산 (원)			
		☐ 어업권 (원)		☐ 임목재산 (원)			
		☐ 조합입주권 (원)		☐ 분양권 (원)			
		☐ 회원권 (원)		☐ 기타(중여) (원)			
	자동차	☐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 ()			
	금융재산	☐ 기타(중여) (원)		☐ 금융재산 (원)			
		☐ 기타일시금 (원)					
	부채	☐ 대출금 (원)		☐ 임대보증금 (원)			
☐ 개인간사채 (원)							
총합계	원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_____ 원 (※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					
	재산	_____ 원 (※ 판단기준 : 1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_____ 원 (※ 판단기준 : 900만원 이하)					

(뒷면)

신청금액	일금 원(₩)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타 지원제도 연계여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지원여부	신청 유무	☐ ① 유 ☐ ② 무
		'①유' 경우	☐ ①선 정(횟수: 회 지원일자: 지원금액:) 선정내용 ☐ ①생계 ☐ ②의료 ☐ ③주거 ☐ ④사회복지시설이용 ☐ ⑤교육 ☐ ⑥기타 : ☐ ②미선정(사유:)
		'②무' 경우	미신청 사유 :
	공동모금회 사업 지원여부	신청 유무	☐ ① 유 ☐ ② 무
		'①유' 경우	☐ ①선 정(횟수: 회 지원일자: 지원금액:) 선정내용 : ☐ ①생계 ☐ ②의료 ☐ ③주거 ☐ ④사회복지시설이용 ☐ ⑤교육 ☐ ⑥기타 : ☐ ②미선정(사유:)
		'②무' 경우	미신청 사유 :
지원의 필요성			
상기 내용은 허위 없이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파랑새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세대유형, 생계지원, 주소(등본, 실거주지), 가족현황(성명, 관계, 생년월일(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소득), 수혜자 가구 재산 및 주거 현황(월 소득, 재산 현황, 해당 증빙서류)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파랑새기금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랑새기금 신청 및 관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귀하

별첨 3.

파랑새기금 현장확인서

(앞면)

긴급지원 신청자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위기발생사유	☐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 제4호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 제5호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 조례로 정한 사유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휴·폐업)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실직)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노숙)					
	사업 신청 분야	☐ ①생계비 ☐ ②의료비 ☐ ③주거비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재 산 사 항	일반재산	☐ 건축물 (원)	☐ 주택 (원)				
		☐ 토지 (원)	☐ 임차보증금 (원)				
		☐ 선박/항공권 (원)	☐ 동산 (원)				
		☐ 어업권 (원)	☐ 입목재산 (원)				
		☐ 조합입주권 (원)	☐ 분양권 (원)				
		☐ 회원권 (원)	☐ 기타(증여) (원)				
	자동차	☐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 ()				
	금융재산	☐ 기타(증여) (원)	☐ 금융재산 (원)				
☐ 기타일시금 (원)							
부채	☐ 대출금 (원)	☐ 임대보증금 (원)					
	☐ 개인간사채 (원)						
총합계	원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_____ 원 (*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					
	재산	_____ 원 (* 판단기준 : 1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_____ 원 (* 판단기준 : 900만원 이하)					

(뒷면)

현장 확인내용	
기타사항	
지원 필요성	☐ 지원 필요(☐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 지원 불필요
위와 같이 파랑새기금 지원 요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현장확인자 (서명 또는 인)	